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분야 신규사업 공청회

2013.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차례

1. 2014년도 공연예술분야 신규사업 내용과 추진방향 1

2.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분야 신규사업 공청회 토론문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 7

유인수 (극단 연우무대 대표) 9

김형희 (트러스트무용단 대표) 11

김소현 (TIMF 앙상블 이사) 13

2014년도 공연예술분야 신규사업 내용과 추진방향

신규사업 공청회 2013.12.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진흥본부

목 차

- I. 2014년도 공연예술분야 사업방향
- II. 2014년도 공연예술분야 사업구조
- III. 2014년도 공연예술분야 신규사업
 - 01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사업
 - 02 공연창작 전문단체 창작단원 지원
 - 03 무대기술인력 지원사업 (스텝뱅크)
 - 04 공연예술 종합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2>

I. 2014년도 공연예술분야 사업방향

| 현황 | 방향 |
|--|--|
| 1. 기초(순수)공연예술시장의 어려움 지속 (수요정체) 2. 산업화된 예술과의 경쟁심화 3. 창작시장조건의 변화 (제작사 시스템 등) 4. 극장, 창작단체 등 기초인프라 토대 미흡 5. 재정투자 확대 (문화융성) | 1. 극장, 창작단체 중심으로 창작 기초 토대를 강화하는 육성정책 집중 ※ 프로젝트 지원에서 인프라 지원으로 신규사업 집중 2. 정부, 문화예술위원회 간 공연예술 분야 사업 분담체계 개편 ※ 문화예술위원회로 대폭사업이관 3. 공연예술계의 지속적 자생능력 강화 지원 ※ 후원개발 지원, 지원정보종합 안내기능 개설 등 |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문화예술진흥기금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방안」 발표 ('13.9.17)
 (내용) 민간예술단체지원 문화예술위원회로 통합일원화, 선별적 소액다건 방식의 지원에서 포괄적, 인프라 강화 방식으로 지원방식 전환

<3>

II. 2014년도 공연예술분야 사업구성

■ 문예진흥기금 창작지원 사업예산 현황 (국회심의과정 중 조정 가능)

| 구분 | '13년(A) | '14년(B) | B-A | (단위 : 백만 원) 증감률 |
|-------------|---------|---------|--------|--------------------|
| ○ 예술창작지원 | 31,716 | 52,962 | 21,246 | 67.0% |
| ▪ 문학창작지원 | 2,550 | 3,200 | 650 | 25.5% |
| ▪ 시각창작지원 | 3,583 | 4,433 | 850 | 23.7% |
| ▪ 공연예술창작지원 | 23,499 | 43,099 | 19,600 | 83.4% |
| ▪ 융복합예술창작지원 | 2,084 | 2,230 | 146 | 7.0% |

※ 문학, 시각창작지원의 경우 정부사업 등 다른사업에서 예산 증액

■ 주요사업 (편제와 변화)

- 신규사업
 - 기초공연활성화 (대관료, 스태프인력지원 등) 120억 원
 - 공연연습공간 조성운영 : 100억 원
- 이관사업 (정부→문화예술위원회)
 -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 50억원
 - 뮤지컬창작 지원사업 50억원
 - 국가급 공연행사 (신년음악회, 발레축제 등) 38.8억원
 - 전통예술창작활성화지원 사업 : 민속예술축제 등 31.7억원
- 종료사업 : 공연예술창작활동지원 (사후지원) 23.5억원

<4>

III . 2014년도 공연예술분야 신규사업

■ 신규사업 등 사업계획 수립 의견수렴 및 협의 경과

| 일시 | 자문 내용 |
|----------|--|
| 8.13(화) | 공연예술창작기금, 단체 집중지원사업 |
| 8.16(금) | 공연예술창작기금, 단체 집중지원사업 |
| 8.19(월) | 단체집중지원사업, 대관료지원사업,스텝지원사업 |
| 8.20(화) | 단체집중지원사업, 대관료지원사업,스텝지원사업 |
| 9.27(금) | 대관료 지원사업 관련 대학로 소극장 운영 현황 청취 |
| 10.4(금) | 대관료 지원사업, 스텝지원사업 등 자문 - 장르별, 지역별 대관료지원사업 차별화 |
| 10.8(화) | 창작산실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점검(연극분야) |
| 10.15(화) | 전통분야 국고이관사업 업무협의 |
| 10.22(수) | 대관료지원사업, 단체집중지원사업 등 |
| 10.23(목) | 대관료지원사업, 단체집중지원사업 등 |
| 10.23(목) | 전통분야 국고이관사업 업무협의 (천차만별 콘서트 등) |
| 10.23(목) | 전통분야 국고이관사업 업무협의 (21C프로젝트 지원사업 등) |
| 10.24(금) | 신년음악회, 발레축제, 오페라축제 관련 업무협의 |
| 10.30(수) | 2014년 주요 신규사업 주요 쟁점 논의 - 대관료지원사업, 창작산실,단체집중지원사업 등 |
| 11 ~ 12월 | 사업내용 및 예산 협의 지속 (정부, 국회) |

<5>

III . 2014년도 공연예술분야 신규사업

01 01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사업

- 배경 (목적) : 공연단체의 창작비용 중 대관료 부담 완화
작품공연(프로젝트) 심사 지원방식이 아닌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의
극장대관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창작 기초여건 제공
※ '12년 연극, 무용, 음악, 전통 공연 대관료지불액 : 740억 원 추산
- 지원대상 : 1안) 문화예술진흥법 7조에 정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단체 중
공연예술 창작단체
2안) 공연예술 창작단체 (제한 없음)
※ 문화예술위원회 안 : 1안 (and) 시설,대관료 적정 극장(공연장)
에서 개최한 공연으로 제한
※ 대관료지원으로 인한 극장(공연장)의 대관료 인상유발 억제 필요
- 지원절차 : (단체) 공연계획 및 대관료지원신청 → (주관처)적격확인 및 회신
→ (단체) 공연후 결과 및 증빙서류 제출 → (주관처)확인 및 지원
- 주관처 : 전국적 사업추진을 위해 광역 시도 문화재단이 지역별로 주관
※ 문화재단이 없는 5개 시도(세종시 포함) : 지자체가 직접주관
- 지원규모 : 1회 공연 대관료 부담액의 최고 60%이내 (일정한도 이내)
※ 연극의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 장르와 연극의
대관료 지원 비율 차등 설정 추진
※ '14년도 책정예정 예산 : 60억 원 내외 (예정)

<6>

III . 2014년도 공연예술분야 신규사업

01
02
03
04

02 공연예술 전문단체 창작단원 지원

- 배경 (목적) : 국립단체에 비해 민간 공연예술 창작단체지원 미흡
공연예술창작단체는 창작, 인력육성, 관객개발의 핵심 역할 수행
단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단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창작의 최소한
여건 지원
※ '10년 민간공연예술단체의 자립도(자체수입비중) : 53%
※ '10년 국공립 포함 전체 창작단원 : 35,122명
- 지원대상 : 문화예술진흥법 7조에 정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단체 중 창작
단체에 상시 고용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창작 단원
※ '13년 기준 321개 공연예술 창작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4대보험
가입자를 고용한 단체는 187개
※ 연극 50 / 무용 12 / 음악 49 / 전통 47 / 기타 29개 추산
-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신고 및 신청 → 심의 → 인건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원금 교부 (분기별 사후지원)
- 지원규모 : 단체별 기준 : 단체별 창자단원 전체 인원 중 일정 비율 설정
단원 일인당 지원기준 : 월 100만원 내외
※ 사회적 기업 인건비지원 규모 : 월 120만원 내외
※ '14년도 사업예산 : 35억 원 내외 (예정)
- 지원제외 : 정부, 지자체, 언론사 소속 또는 그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7>

III . 2014년도 공연예술분야 신규사업

01
02
03
04

03 무대기술인력지원사업 (스텝뱅크)

- 배경 (목적) : 소공연장에 무대기술 전문인력을 배치, 인건비를 지원하여 극장의
발전 및 예술단체에 대한 무대기술 서비스 제공
무대기술 전문인력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 공연장도 전문
인력을 고용하도록 유도
※ 500석 미만 극장은 전문무대기술인력 고용의무 없음 (공연법)
※ '12년 기준 300석 미만 공연장수 560개(51.2%)
500석 미만 공연장수 775개 (70.3%)
- 지원대상 :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 중 무대기술전문인력 고용의무 제외 공연장
(1안) 500석 미만 2안) 300석 미만
- 지원규모 : 공연장 1개소 지원인력 : 1명
지원금액 : 월 100만원 내외 (※ 자부담 조건 : 지원금의 30%)
※ '14년도 예산 : 25억원 내외 (예정)
- 지원절차

| 사업계획수립 | 뱅크 구성 | 공모 및 심의 | 교부/사업시행 | 성과보고 제출 |
|----------------------|-----------------------------------|-------------------------|--------------------------------|--------------------------------|
| · 지원절차 및 심의 기준 수립 | · 무대기술인력모집 공고 및 선발 (스텝뱅크구성) | · 소공연장 스텝 지원 공모 및 심의 | · 지원금교부 · 사업수행 · 현장활동 평가 | · 정산 및 성과보고 제출 · 평가결과 환류 |

<8>

III . 2014년도 공연예술분야 신규사업

01
02
03
04

04 공연예술 종합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 배경(목적) : 민간 공연예술단체(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
- 조성계획 : 전국 3~5개소 (예정)
- 공간구성
 - 연습실 : 대극장용 연습실(1개), 중극장용 연습실(2개), 소극장용 연습실(2개)
 - 세미나실 : 2개실
 - 소품뱅크(보관소) : 1개실
 - 예술가 휴게공간(카페 등 네트워킹 공간) : 1개실
 - ※ 지역별 특성 및 수요에 따라 시설구성은 달라질 수 있음
- 조성지역 선정 : 현장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
 - ※ 사업의 안정성, 지속성을 위해 지역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또는 공공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대지 및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
- 운영방식 : 문화예술위원회와 해당 지역 문화재단이 협력 운영
- 사업예산 : '14년 100억 원 (예정 / 시설개선비 임차비 운영비 제반비용 종합)

<9>

감사합니다

<10>

2014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분야 신규사업 토론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

1. (신규+기존) 공연예술지원정책의 통합적 정책목표와 사업간 역할분담의 문제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소위 ‘패키지형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이후 논의과정에서 ‘패키지형 지원사업’은 각각의 단위사업별 신규사업으로 설계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열거형, 모자이크식 공연예술지원체계로의 전환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지역별) 공연예술창작지원, 공연장상주예술단체지원,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 공연창작 전문단체 역량강화지원, 무대기술 스템뱅크 지원, 공연예술 종합연습 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등
- 문제는 다양성이 심화된 개별 지원사업 상호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지시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목표가 전제되어 있는가 하는 것
- 통합적 정책목표와 사업별 지원목적, 대상 등이 명확하지 못할 경우 단위사업간 중복지원에 대한 기준설정, 지원사업별 추진주체의 적정성, 신청-심사-평가 등의 지원행정 효율성 저하 현상 등의 어려움이 수반될 수 밖에 없을 것임

2. ‘간접지원’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이 궁극적으로 공연창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 공연예술분야 신규사업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 방식이 전진배치되어 있다는 것임
- 변화된 정책환경에 따라 공연단체는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에 대한 자체재원 조성 책임이 높아지는 반면, 창작활동에 수반되는 공간활용 및 인건비 등의 간접 경비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
- 여전히 민간 공연단체의 재정적 자생력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포트폴리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
- 자칫, 재정적 충분성이 확보된 공연단체와 그렇지 못한 공연단체간 공연창작의 양극화(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지원신청자격 한정성에 따른 예술현장의 혼선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사업, 공연창작 전문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신청자격을 전문예술단체 및 법인으로 한정시키게 된다면,
- 우수한 창작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로 지정되지 못한 공연단체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동시에, 지원사업 취지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로 지원신청자격을 엄격하게 한정한다 하더라도 예술현장에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책 예고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대부분의 지자체가 연1회, 주로 12월에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신청과 지정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특정 지원사업에 대한 구조적 배제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임

4.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사업

- 타 공연예술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승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본 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과 목적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공연예술 분야의 불완전공급 확대, 공연장대관 가수요, 민간 공연장 대관비용 인상요인 억제 등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5. 공연창작 전문단체 역량강화지원(창작단원 지원)

-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의 목적과 우선적 지원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 단체별 지원범위와 기간 획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창작단원 총원 대비 최대 지원비율, 인건비 지원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다년간 지원규정
- 인건비 지원 이외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워크숍, 단원재교육 등)을 포함시킬 것인가?

6. 공연예술 종합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 예술위원회와 지역(재단)간 협력 운영방식이 의미하는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 신규 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확대, 재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 규격화된 공연예술 종합연습공간의 컨셉을 넘어 공연예술 창작스튜디오, 음악녹음실, 영상편집실 등의 기능을 겸비한 공연예술창작(제작)지원센터 모델로 접근해보는 것은 어떨까?

2014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분야 신규사업 토론

유인수 (극단 연우무대 대표)

극단 연우무대 대표 유인수입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이 추가 편성된 부분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편성된 예산과 사업목표에 대한 논의 보다는 4가지 사업목표에 맞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사안별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사업

사업의 목적은 공연 대관료 지원을 통해 공연단체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원은 기존의 프로젝트 지원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의 적격 판단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타 지원 대상보다 더 많은 단체의 포괄적 지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별 작업으로 최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안의 지원 신청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지원 심의등 지원 업무를 최소화하고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순위로 하되 추가로 예산이 남는다면 자격과 무관하게 단체의 활동 경력과 예술적 성과 등을 판단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안과 2안의 보완 방법)

2. 공연창작 전문단체 역량강화지원(창작단원 지원)

이 지원은 국립단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 공연단체에 대한 단원 인건비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 단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기서 창작단원의 정의가 작가 연출 배우만을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나가지 않지만 급여 형태의 단원도 있을 수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4대 보험을 내고 상시 단원을 유지하려면 영리 형태의 단체가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지원 자격 요건을 고민해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지원 기준도 정해야 합니다. 예술적 성과나 활동량을 평가 하여 그 중에 선택하거나 공연장 대관료 사업처럼 전문예술 단체라는 기본적인 단체 기준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구요!

3. 무대기술 스탭뱅크 지원사업

공연제작 환경이 열악한 영세 소공연장에 국가가 인증한 우수 무대예술전문인력을 배치, 지원함으로써 공연 창작환경 개선을 통한 예술단체가 양질의 공연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1999년 무대예술전문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공연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가 현재 자격증 발급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 해결을 통해 사업적 한계 극복하기 위한 목적과 자격증 소지자 중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무대예술전문인을 공연장에 배치함으로써 연 1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도 공연장 선택의 지원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와 인력 배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장의 전년도 3년동안 운영 성과를 토대로 한다거나 공연장의 우수성 및 기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로 소극장 같은 경우는 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 협회 소속 극장을 기준으로 하거나 논의가 필요합니다.

4. 공연예술 종합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 공연예술 단체(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역의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서울 지역에 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 단체도 많고 임대료도 높고 경쟁이 높아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지역은 공간 활용도도 높고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단체가 적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한정하여 진행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의견도 들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이상 몇 가지 의견입니다.

갑자기 큰 지원이 생기는거라 좋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데 효율적으로 잘 배분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좋은 작품과 활동을 하는 단체가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지원을 받는것도 나쁘지 않구요... 그럼 토론회 때 뵙겠습니다.

2014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분야 신규사업 토론

김 형 희 (트러스트무용단 대표)

1.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 사업

무용단체에 대한 대관료 지원 사업은 실제 무용단체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함

- > 무용 장르는 타 장르에 비해 일주일 이내로, 대체로 공연 기간이 짧음.
- > 한국공연예술센터에서 하는 공동기획 등은 대관료가 저렴함.
- > 초청공연을 하는 경우 거의 무의미한 지원 사업임.

2. 공연창작 전문단체 역량강화지원(창작단원 지원)

집중지원 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과의 비교 통해서 본 공연창작 전문단체 역량 강화지원(창작단원 지원 사업)

- > 지난 2007년~2009년 1년에 1억씩 집중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트러스트무용단은 집중지원을 통해 좀 더 안정적으로 창작, 나눔, 교육,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
- > 지난 2010년~2012년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단원들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 (2010년 인건비 지원 8명; 사대보험 포함, 2011년 인건비 지원 8명 ; 사대보험 포함, 2012년 인건비 지원 12명; 사대보험 포함)
- > 인건비 지원 사업의 단점
 - 인건비 지원의 경우 규칙적인 출근을 통해 일정한 양의 업무를 해야 하는 일반 직장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규칙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예술인들에게는 잘 맞지 않는 지원 사업임. (단체와 단원들 모두에게 부담)
 - 기업과 다른 특성을 가진 예술단체에게 꾸준한 사업 수익을 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겨 줌.
 - 지원 기간이 끝난 후 서로에 대한 책임을 확산하기 어려움.

3. 무대기술 스텝뱅크 지원사업

- > 예술단체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라 공간을 운영하는 단체에 해당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지만, 단체와 스텝을 매칭하여 공연을 할 경우 무대기술 인력에게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단체에 지원을 해주어도 유용할 듯함.

4. 공연예술 종합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안정성, 지속성, 교류 필요

- > 안정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공간 사용이 가능해야 함
- > 소재지 가까운 곳에 세트나 소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 지역 내에 있는 타 예술단체들과의 교류를 위해 사무실 또는 예술가들의 휴게공간 필요

2014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분야 신규사업 토론

김소현 ((사)TIMF양상블 이사)

1.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 사업

열악한 재정구조 하에 운영되고 있는 공연예술단체에 창작을 독려하고 기획하는 공연에 최적화된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는 사업이 되리라 기대한다.

- 질의 및 제안사항

- 1) 지원 신청 자격 -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확대해 나가는 방안
- 2) 지원 심의 - 지원 자격 해당단체를 모두 지원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의 공연 성격과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심의 절차 필요
- 3) 등록 공연장의 선정 기준
- 4) 지원 시기 - 대관계약서 첨부라 함은 대관 확정 후 지원 신청이라는 의미인데 기금 확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관 확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대관 계약이 1년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지원 신청 시기를 현실화시켜야 함

2. 공연창작 전문단체 역량강화지원

고정급여를 지급하면서 운영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어 줄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이 사업으로 인해 단체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보유 레퍼토리를 늘리는 한편, 재공연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단체와 구성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공연의 예술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질의 및 제안사항

- 1) 지원 심의 기준
- 2) 운영인력에 대한 지원 추가 계획

3. 공연예술 종합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

연습공간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대부분의 공연예술단체들이 많은 예산을 연습공간 대여에 쓰고 있고 때로는 공연 성격에 맞는 연습공간을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재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으로 해결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상주공연장에서의 공연으로 국한됨으로써 제한적이므로 이 사업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었으면 한다.

- 질의 및 제안사항

- 1) 위치 선정의 현실화 - 실 수요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경우 조성의 의미가 없음
- 2) 기존 유료 연습공간과의 차별성 - 시설과 가격의 혜택
- 3) 사용 자격 -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에 우선권을 주고 대형 연습실의 경우 가동률을 고려하여 기획사 등 영리단체에도 대여 고려 (단, 가격의 차별화)
- 4) 주차, 반입의 용이성 - 특히 음악의 경우 악기를 가지고 이동해야 하므로 주차가 용이해야 함 악기 반입을 위한 반입구 유무 여부 또는 승강기 크기 고려
- 5) 운영시간 현실화 - 많은 민간단체들은 상근 단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늦은 시간 연습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현실화 해야 함

